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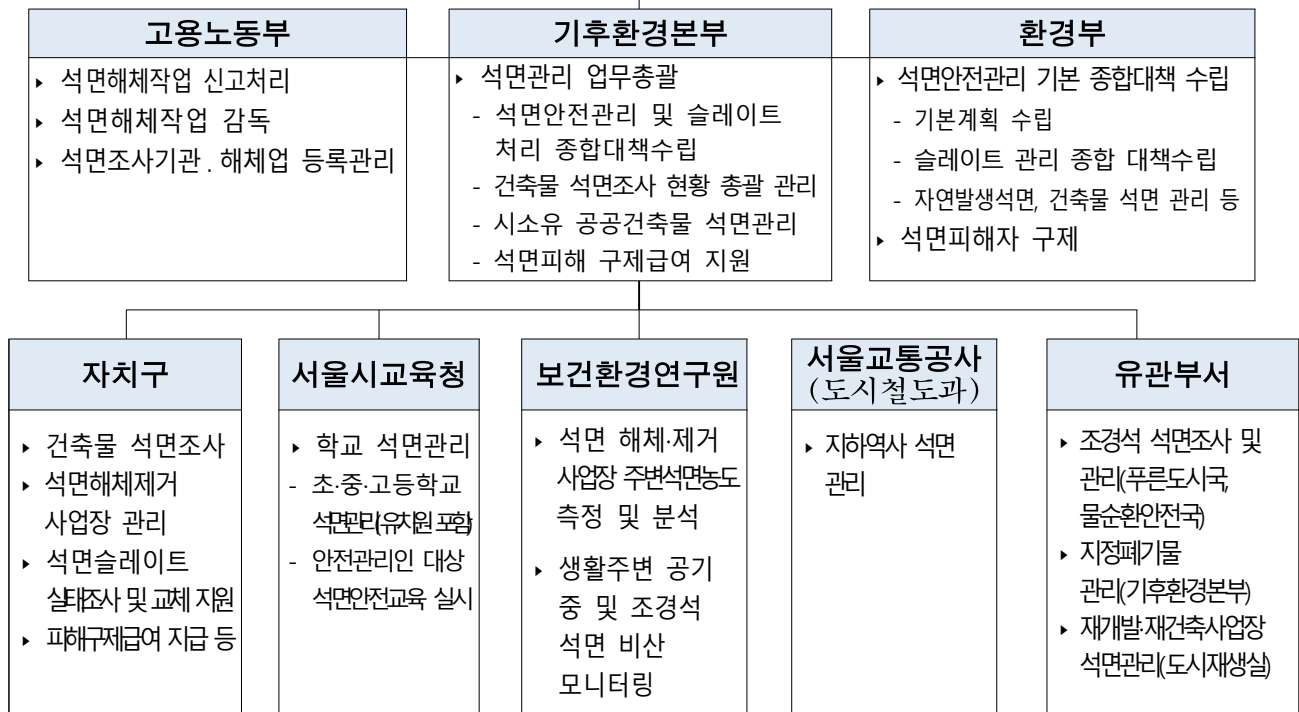
'21년 석면 안전관리 추진 계획

□ 추진개요

①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소유 석면건축물 관리 및 위해성 조사 ○ 석면조사 완료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학교 석면 관리 ○ 석면건축물 관리방법 및 파손시 조치방법 안내·홍보 강화
②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파악 및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 주택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③	다중이용시설 석면 중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
④	공기 중 석면 비산 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 제거작업 후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 생활주변 공기 중 및 조경석 석면 비산 모니터링
⑤	석면질환자 피해 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추진체계

서울특별시



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

석면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 석면건축물 현황

(2021.1월 기준)

구분	합계	공공건축물					어린이 집	대학교	다중 이용 시설	기타
		소계	행정 기관	공공 기관	특수 법인	지방 공단				
조사대상 건축물	13,443	3,994	2,684	663	250	397	4,225	1,481	3,182	561
석면건축물	2,672	1,060	641	253	109	57	276	615	622	99

※ 기타 :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시설, 어린이시설, 기타 노유자시설

○ 점검대상 : 석면건축물 2,672개소

○ 점검기간 : '21. 3 ~ 12월

○ 점검방법(연 1회)

- 서울시 : 총괄

- 자치구 : 지도점검(위해성평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이수 여부 등 확인)

○ 점검내용

-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위해성 평가 실시 여부(연 2회)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실시 여부(격년 1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석면안전관리교육 이수(8시간) 여부

- 신규 석면조사 건축물 대상(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대해 석면조사 실시

학교 석면관리(서울시교육청)

○ 학교건축물 석면 현황

(2020.12월 기준)

구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교
석면검출	1,551	402	517	329	276	27
제거·교체 실적	560	163	158	113	113	13
석면건축물 잔여대상	991	239	359	216	163	14

○ '21년 석면 제거계획

- 대상 : 106개교(372억원)

- 방법 : 방학 기간을 이용 학교별로 시행

- 점검 :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관내 석면공사 현장 지도점검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리플릿 제작 및 배포

- 주요내용 : 석면조사 제도 및 석면안전관리 요령 안내
- 제작부수 : 20,000부
- 배 부 처 : 25개 자치구(자치구별 800부)
- 활용방안
 - 자치구 관내 석면건축물에 배부하여 석면 관리 요령 안내
 -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내 비치하여 석면조사 제도 주민 홍보

2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제거

☐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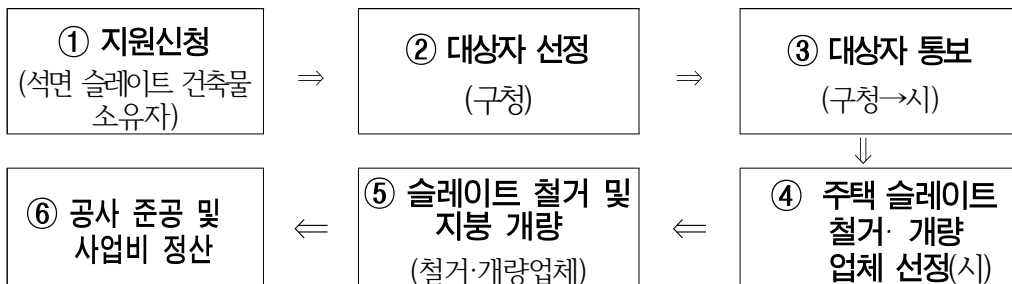
- 추진배경 : '13년, '16년 실태조사 후 변화된 슬레이트 지붕 현황 파악
- 조사기간 : 2021. 3. ~ 2021. 8.
- 조사대상 : 주택, 창고 등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7,281동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추진
- 조사내용 : 용도(주택, 창고, 공장 등), 면적, 사용여부 및 연식 조사

☐ 주택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및 개량

- 추진목표 : 철거 28동, 개량 24동
- 추진기간 : 2021. 3 ~ 12월
- 지원기준금액

구 분	해체·제거(철거)비	교체·개량비
사회적 취약계층가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동(棟)당 344만원	동(棟)당 최대 300만원

○ 추진방법



3 다중이용시설 석면 중점 관리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석면 실태조사

- 추진대상 : 어린이, 노인 등 건강민감군 이용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120개소
 - 학원(430 m^2 피만), 지역아동센터(500 m^2 피만), 노인요양시설(1,000 m^2 피만) 등
- ※ '20년 추진실적 : 70개소 조사(석면 검출 시설 33개소)
- 추진기간 : '21. 5 ~ 10월
- 추진방법 : 석면조사기관 용역 추진
- 사업내용
 - 석면함유 건축물 확인을 위한 석면조사 실시(시료채취·분석 포함)
 - 위해성 평가 실시 및 결과 등급 안내
 - 석면지도 작성,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요령 컨설팅
 - '20년 실태조사 시 석면 검출된 33개소에 대한 석면 농도 측정(보건환경연구원)

지하역사 석면 제거 및 모니터링 강화(서울교통공사)

- 추진대상 : 석면 지하역사 5개소(삼성, 안국, 을지로3가, 성수, 노원)
 - 삼성(뽕철재/1,660 m^2), 안국·을지로3가·성수·노원(석면마감재/5,335 m^2)
- 모니터링
 - (서울교통공사)특별관리역사 지정을 통한 석면 관리
 - 석면 지하역사(5개) 석면자재 탈락여부 수시 점검 및 석면농도 측정
 - (보건환경연구원)지하역사 석면 농도 정기 모니터링
 - 석면 지하역사(5개) 분기 1회 석면농도 측정

4 공기 중 석면 비산 원천 차단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강화

-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내용

구 분	〈작업장 내〉	〈작업장 외〉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석면안전관리법
관리기관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관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신고 (주택 200㎡, 일반건물 50㎡이상) - 외부 석면비산방지 조치 - 작업자 건강보호조치(위생시설설치 등) - 작업장 내 석면농도 측정 (작업 중 0.1개/cm³, 작업 후 0.01개/cm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해체·제거 작업 공개(자치구 홈페이지)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 비산농도 측정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등록 - 석면해체·제거 감리인 지정

- 석면해체·제거 작업(명칭, 기간, 주소, 작업내용 등)을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정도 측정 및 점검

구 분	석면건축자재 500㎡ 이상 사업장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 촉진사업장, 석면건축자재 5,000㎡ 이상 사업장
측정주체	석면해체·제거 사업 발주자	구청장
측정방법	석면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정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
결과공개	측정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여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사업장 점검(연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 석면해체제거 신고 사항, 석면비산방지 조치 등 점검

- 석면해체·제거 작업 감리인 등록
 - 현 황 : '21.1월 기준 감리인 80개소 등록(감리인당 감리원 2명 이상 갖춤)
 - 절 차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되려는 자가 시·도지사에 등록
 - 기 준 : 자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자
 - 감리인 역할 :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석면농도기준 준수여부 관리 등

5 석면질병 피해 구제

□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 추진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자치구에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장이 지급
- 재 원 : 석면피해구제기금(국비) 90%, 지방비(시·구) 10% 분담 지급
 - 분담비율 : 시(7), 구(3)(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시기

구제급여	지급시기	지급액	지급대상
요양급여 (의료비)	피해인정시 (수시)	· 석면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민 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요양생활수당	피해인정시 (매월)	· 요양급여 이외 치료경비, 요양에 필요한 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석면피해인정자
장의비	피인정자 사망시	·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구제급여 조정금	피인정자 사망시	· 특별유족조위금과 지급된 요양급여 및 요양 수당의 합계액과의 차액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석면피해인정자의 유족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 인정시	· 요양급여 및 요양수당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별유족

□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불임참조

※ '21년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사업명	사업내용	예산 (천원)	추진 일정			
			1/4	2/4	3/4	4/4
	총 계	738,080				
	소 계	133,960				
석면관리 사업	시 소유 공공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석면농도 측정 용역 (대상 : 348개소)	90,560		3 ~ 8월		
	비규제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관련 실태조사 (대상 : 120개소)	38,400		5 ~ 10월		
	석면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배포	5,000		3 ~ 12월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대상 : 28동)	205,520		3 ~ 12월		
석면슬레이트 실태조사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240,000		3 ~ 8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 구제급여	158,600		1 ~ 12월		